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20가단1436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2. 19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21,848,445원 및 그 중 4,842,682원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, 3,922,265원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. 11. 15. 체결한 매매계약은 21,848,4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21,848,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조미옥

별지